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9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규남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규남 의원)

### 1. 제안이유

- K-POP 성장으로 세계적인 한류 영향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아이돌을 발굴·육성 등을 책임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연예기획사)의 85%(3,196개)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연습 기간을 겪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장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나.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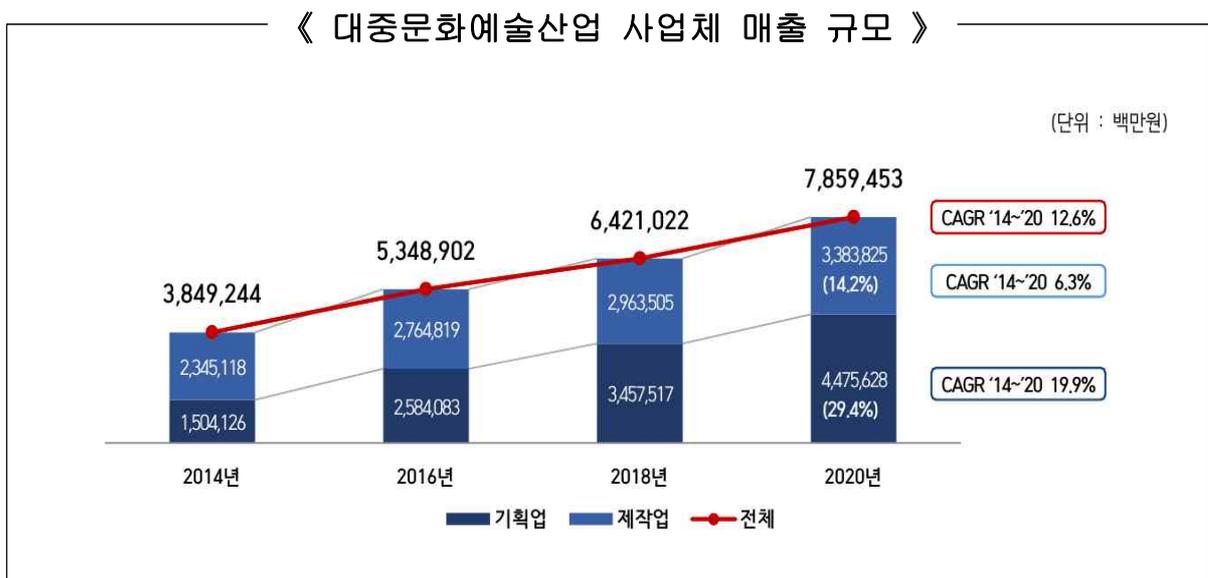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발의되었음.

#### 나. 제정의 필요성

- 한류의 주역인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2020년 기준 7조 8,594억원으로 2014년도부터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2.6%에 이를 만큼 두드러진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sup>1)</sup>



-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수 또한 꾸준히 늘어 2020년 기준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10,586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의 수는 1,895명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17.9%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습생은 각종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및 휴식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이러한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된 제정안의 취지는 이해됨.
- 다만,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만을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특정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경제정책실과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문화본부의 소관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소관 문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의 수혜 대상인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제정안
서울특별시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



수정의견
서울특별시 <u>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

- 다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우선 적용 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술인’의 범위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은 사람(연습생)이 포함됨.

### 《 ‘문화예술인’의 법적 정의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 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소년’,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의 수혜 대상을 대중문화예술 연습생뿐만이 아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문화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2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이란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 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 받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도 포기자</u>”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 연습생 계약 종료 및 계약해지가 된 사람을 말한다.</u></p> <p>4. “<u>대중문화예술용역</u>”이란 「<u>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u>」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u>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u></p>	<p>제2조(정의) ----- -----.</p> <p>1.(제정안과 같음)</p> <p>2. “<u>청소년 문화예술인</u>”이란 청소년이면서 「<u>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u>”이란 청소년 이면서 「<u>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4. “<u>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p>

<p>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p> <p>5.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p> <p>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p>	<p>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

##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제정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으로 ▶폭언·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의 보호,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과 중도포기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제정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위원회' 를 설치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3. 9. 12. 선고 2013추50)<sup>2)</sup>에 따르면 동 제정안은 의회가 추천한 자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 안 제6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u></u>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2)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한정하여 원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구 국토계획법 제114조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p>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lt;신설&gt;</p> <p>1.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p> <p>2.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p> <p>3.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4. 그 밖에 시장이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생략)</p>	<p>-----.</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u>서울특별시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p> <p>2. <u>청소년 문화예술인</u>----- -----</p> <p>3. <u>문화예술 분야</u> ----- -----</p> <p>4.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5.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p> <p>④ (제정안과 같음)</p>
--	---

#### 4)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안 제7조)

- 제정안은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 5) 운영위탁 및 행정적 지원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제정안(안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임.

##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연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되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이는 청소년 예술인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성폭력 등 불공정한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u>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u>문화예술활동</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이란 <u>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 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 받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li>3.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도 포기자</u>”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 연습생 계약 종료 및 계약해지가 된 사람</u>을 말한다.</li> <li>4. “<u>대중문화예술용역</u>”이란 「<u>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u>」에 따른 <u>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u>을 말한다.</li> <li>5. “<u>대중문화예술인</u>”이란 <u>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u>를 말한다.</li> <li>6. “<u>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u>”란 <u>대중문화예술 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 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u>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제정안과 같음)</li> <li>2. “<u>청소년 문화예술인</u>”이란 <u>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li>3. “<u>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u>”이란 <u>청소년 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u>을 말한다.</li> <li>4. “<u>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란 <u>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u>을 말한다.</li> </ol>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u>는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무) ① -----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② <u>시장</u>은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  -----.</p>
<p>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p>
<p>제5조(지원 사업 등) ① <u>시장</u>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보호에 관한 사항</li> <li>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보호에 관한 사항</li> <li>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보호에 관한 사항</li> <li>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보호에 관한 사항</li> <li>5.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 및 <u>중도포기자</u>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li> <li>6.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 및 <u>중도포기자</u>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li> <li>7.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u>시장</u>이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5조(지원 사업 등) ①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1.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2.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3.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4.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5. <u>청소년 문화예술인</u> 및 <u>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  6. <u>청소년 문화예술인</u> 및 <u>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  7.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8.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②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②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p> <p>&lt;신 설&gt;</p> <p>1.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p> <p>2. <u>대중문화예술산업</u>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p> <p>3. (생 략)</p> <p>4. 그 밖에 시장이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생 략)</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 ----- <u>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u> 하여야 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p> <p>2. <u>청소년 문화예술인</u>----- -----</p> <p>3. <u>문화예술 분야</u> -----</p> <p>4.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5.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p> <p>④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li> <li>2.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li> <li>3.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li> <li>4.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li> <li>6. 그 밖에 시장이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u>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생략)</p>	<p>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li> <li>2.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li> <li>3.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li> <li>4.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li> <li>5. ----- <u>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u>----- ----- -----</li> </ol>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관련 법인</u>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운영의 위탁) ----- -----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p>
<p>제9조(비밀준수)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인적사항</u>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9조(비밀준수)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협력)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 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
제11조(표창) 시장은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 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 -----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VIII. 수정안의 요지

#####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무적 위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청소년 문화예술인’,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위원회 구성 방법 중 일부 피추천자에 대한 의무적 위촉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  
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  
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 를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을 “청소년 문화예술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대중문화예술산업”을 “문화예술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를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로 한다.

안 제8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각각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을 “청소년 문화예술인”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u>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문화예술인</u>----- -----<u>문화예술활동</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u> <u>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 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중 도 포기자”</u>란 <u>청소년 문화예</u></p>	<p>제2조(정의) ----- -----.</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청소년 문화예술인”</u>이란 <u>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3. <u>“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u>이란 <u>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u></p>

술 연습생 중 연습생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가 된 사람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용역” 이란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5. “대중문화예술인” 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란 대중 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제3조(책무) ①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1. ----- 청소년 문화예술인-----  
-----
2. -----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 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

-----

3.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4.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

7. 청소년 문화예술인-----

-----

8.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8.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② -----청소년 문화예술인-----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 . -----

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 설>

1.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생략)

-----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  
-----

3. 문화예술 분야 -----  
-----  
-----

4.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략)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 예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의

5. ----- 청소년 문화 예술인-----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
5. ----- 청소년 문화 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중도포기자-----  
-----  
-----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운영의 위탁) -----  
-----  
-----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  
-----.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  
-----  
-----청소년 문화예술인-----  
-----.

제10조(협력) ----- 청소년 문화예술인-----  
-----  
-----  
-----.

제11조(표창) -----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  
-----.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며,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폭언·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 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 · 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